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이유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함

### 2. 주요골자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결정·공시된 개별(공동)주택가격의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에 추가함

### 3. 관계법령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, 제16조

#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해주어야하는 사항이 발생되어 그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(별표내용추가)

- 그 수수료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자가 없는 등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2005. 4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